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205호
2. 발의자 : 이종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5. 10. 20.
4. 회부일자 : 2025. 10. 23.

II . 제안이유

-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에 따라 조례 제명이 「시립학교」에서 「공립학교」로 일괄 개정됨.
-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 및 제2조의 「서울특별시립」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」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됨.

III . 주요내용

1.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조~제2조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2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타

○ 입법예고(2025. 10. 28. ~ 2025. 11. 1.) 결과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5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서울특별시립’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제2조는 ‘서울특별시립’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지난 2025년 4월 30일,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는 시민이 조례의 소관 기관과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에 기관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당시 일괄 개정 조례는 조례 제명만 개정한 것으로 개별 조례 조문에 포함된 ‘서울특별시립’은 개정되지 못하였는바, 금번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조항에 ‘서울특별시립’으로 규정된 내용을 ‘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- 이에 동 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명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가영(2180-8270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